

# 섹션 1557: 마켓플레이스의 건강 보험 및 기타 건강 플랜의 보장사항

---

섹션 1557은 Affordable Care Act(ACA, 부담적정보험법)의 공민권법 조항입니다. 섹션 1557은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특정 건강 프로그램 및 활동상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섹션 1557 최종 규칙은 Medicare 환자를 받는 병원이나 Medicaid 지급금을 받는 의사, 건강 보험 마켓 플레이스 및 마켓 플레이스에 참여하는 보험 발행사,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보건복지부)가 자체로 실시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등 HHS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일체의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건강 보험 또는 그룹 건강 보험 혜택 설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규칙 조항의 적용 날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첫 보험 연도(개별 시장의 경우, 보험 증권 연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섹션 1557은 여러 건강 보험에 가입한 개인을 대상으로 비차별 보호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금, 자산, 연방 Medicaid 부응 기금, Medicare 파트 D 지급금, ACA의 표제 I에 따른 재정 지원과 같은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 발행사, 병원, 건강 클리닉, 개업의 사무실, 커뮤니티 건강 센터, 요양원, 주 Medicaid 기관 등
- 주 기반, 연방 운영의 건강 보험 마켓플레이스
- HHS가 운영하는 모든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

건강 보험의 보장사항: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연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한 다음의 조치는 금지됩니다. 해당 주체는 특히 차별적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 건강 관련 보험 플랜이나 기타 보장의 발행 또는 갱신을 부인, 취소, 제한 또는 거부
- 청구에 대한 부인이나 제한 또는 추가 비용 부과 또는 기타 제한이나 제약을 부과
- 건강 관련 보험이나 기타 보장에 있어 차별적인 마케팅 관행을 적용하거나 차별적인 특혜성 설계를 도입 또는 시행
- 성별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성전환자가 다른 성별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장 또는 청구에 대한 부인이나 제한 또는 추가 비용 부과 또는 기타 제한이나 제약을 부과
- 성전환 관련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을 단정적으로 배제, 성전환 관련 특정 의료 서비스의 보장에 대한 부인이나 제한 또는 추가 비용 부과 또는 기타 제한이나 제약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성전환자를 차별

섹션 1557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hhs.gov/civil-rights/for-individuals/section-1557>을 참조하십시오.